삼 성 생 명 확 정 급 여 형 퇴 직 연 금 보 험 ( 무 배 당 ) 사 업 방 법 서

## 사업방법서 별지

##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 1. 보험종목의 명칭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 2. 사업경영의 지역 및 범위

## 가.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가 설정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 (이하 "퇴직급여제도"라 한다)로부터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 나. 범위

이 보험은 법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한다)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설정한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설정 및 운용을 내용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3. 단체 및 가입자단체

#### 가.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는 법 제13조에 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나. 가입자단체

이 보험에서 "가입자단체"는 동일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속하는 가입자의 집단으로 한다.

## 4. 가입자의 추가 가입

-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 중에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 가입시킬 수 있다.
- 나. 가입자단체에 추가 가입한 가입자의 추가 가입일은 '가'에 의해 계약자가 가입자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한다.

## 5. 보험기간 및 부담금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나. 납입기간 : 전기납

다. 수금방법 :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 6.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표준부담금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나. 보충부담금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다. 특별부담금

재정검증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 등의 평가를 통해 적립금이 법규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 라. 일시전환부담금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

## 7. 급여의 종류 및 지급

가.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나.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8.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한다.

## 9.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구분	운용방법의 종류
원리금	• 금리연동형
보 사 보 장형	· 금리연동형 II
下,9,9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 밸류혼합형(클래스H)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실적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배당형	・일반주식형(클래스H)
	・단기채권형(클래스H)
	• 채권형
	· 인덱스주식형
	· 삼성그룹주식형

##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금리연동형
- 금리연동형Ⅱ
- 이율보증형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채권형
- 인덱스주식형
- 삼성그룹주식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 밸류혼합형(클래스H)
-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 일반주식형(클래스H)
- 단기채권형(클래스H)

##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한다)인 경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 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할 경우 투자자그룹(이하 "클래스"라고 한다)별로 서 로 다른 수수료체계 등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한다.
- (3) 자산관리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수탁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자산관리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와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 (4)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펀드유형별로 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 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없음

#### (2) 실적배당형

① 매일 적립금에서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회사는 적립금에서 매일 차감한다. 다만, 펀드별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수탁보

수는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수탁보수
일 반 주 식 형 ( 클 래 스 H )	0.0015753425% (年 0.575%)	0.0008356164% (年 0.305%)		
인 덱 스 주 식 형	0.0018493151% (年 0.675%)	0.0005068493% (年 0.185%)		0.0000273973% (年 0.010%)
삼성그룹주식형	0.0013972603% (年 0.510%)	0.0000273973% (年 0.010%)		
글로벌혼합형 (클래스H)	0.0014246575% (年 0.520%)	0.0001671233% (年 0.061%)		0.0000547945% (年 0.020%)
벨 류 혼 합 형 ( 클 래 스 H )	0.0014246575% (年 0.520%)	0.0004383562% (年 0.160%)	0.0000273973%	
그로스혼합형 (클래스H)	0.0014246575% (年 0.520%)	0.0004328767% (年 0.158%)	(年 0.010%)	
인 덱 스 혼 합 형 ( 클 래 스 H )	0.0012876712% (年 0.470%)	0.0002630137% (年 0.096%)		0.0000273973%
자산배분혼합형 ( 클 래 스 H )	0.0012876712% (年 0.470%)	0.0003917808% (年 0.143%)		(年 0.010%)
채 권 형	0.0008767123% (年 0.320%)	0.0001643836% (年 0.060%)		
단 기 채 권 형 ( 클 래 스 H )	0.0004383562% (年 0.160%)	0.0000547945% (年 0.020%)		

②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마.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지급지 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8영업일 이내에 이체함)
  - ①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 ①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및 이율보증형) 특별계정과 일 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 여 계산한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금리 연동형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11.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

- 가.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해서 '9.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에서 정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운용방법을 복수로 선택한경우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나.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가'에서 설정한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다.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운용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방 법별 편입비율도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 라.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에 의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1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라' (1)의 ① 내지 ④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변경요구일+8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은 운용방법의 해지환급금 지급 및 부

담금 납입 절차를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연동형에서 계약일부터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금리연동형Ⅱ에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이율보증형에서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경과하기 전에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바.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라'에서 정하는 날까지 현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8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12. 원리금보장형의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의 적용이율로 한다.

구 분		적용이율	
금 리	연 동 형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금 리	연 동 형 II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끌모증영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계산
    - ①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 평균하여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7)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o 운용자산이익률(%)

(2×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12/6) × 100

= 6 =  $\Sigma$ {직전(tH)개월말 현재운용자산+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자산)6 - 직전(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 ㈜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H)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 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o 지표금리(%) = (A1 + A2 + A3) / 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지표금리 산출시 가중이동평균이율

$$\frac{\text{Mi}(-3) + \text{Mi}(-2) \times 2 + \text{Mi}(-1) \times 3}{-}$$

Mi(-3):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통화안정 증권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통화안정 증권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 ㈜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 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통화 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인 시점에 동일 자산 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율×80%」를 중도해지이율(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적용하다.
- (2)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의 계산
  - ①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부터 최초 1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 상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 금 납입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부담금 납입일에 납입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납입건별 부담금 규모	최저한도	최고한도	
5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6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80%	기준이율의 175%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85%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95%	
100억원 이상		_	

㈜ 최고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 3. 평균값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영업일 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각 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 터 매1년간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산술평균 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개)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o 운용자산이익률(%)

(2×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12/6) × 100

 $\Sigma$ {직전(H))개월말 현재운용지산·직전(t)개월말 현재운용지산》6 -직전3개월간 투지영업수지차

- ※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 ㈜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내)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 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 3. 평균값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영업일 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담금 납입시점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 인 시점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해지일까 지 적용한다.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2.0%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 적용이율 - 1.5%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3년미만 : 적용이율 - 1.0%

## (3)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 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 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각 단위보험별 규모	최저한도	최고한도
5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6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80%	기준이율의 175%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85%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95%
100억원 이상		_

- ㈜ 최고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o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1, 2, 3년형의 경우「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 5년형의 경우「국고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1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6 + A2×0.4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0.6 + A2×0.4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 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 한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1년, 2년 또는 3년만기 회사 채(A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 한다.
  - 3. 지방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지방채권 최종호 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 한다.
  - 4. 평균값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 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 (4) '가'의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운용방법별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 (屮)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동안 확정 적용하며, '납입 2차년이 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 간 확정 적용한다.
  - (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 (5)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 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4)의 적용기간 이후 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 (6) 적립금 운용방법별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 함) 또는 가입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 라.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한다.
- 마.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 13. 이율보증형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 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 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나.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12. 원리금보장형의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적용이율 보증기간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보험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를 준용한다.
-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한다.
- 마.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단, 급여의 지급인 경우 및 '16. 해지환급금의 지급 '다'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0'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MVA]

o MVA = 1- 
$$\left(\frac{1+i_j}{1+i_h}\right)^{n+\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함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o MVA = 
$$1-(\frac{1+i_{j}}{1+i_{h}+0.5\%})$$
 n+  $\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함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변경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말일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 : 365 또는 366

② i; :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③ i<sub>h</sub>: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잔여보증기간 1년이상인 경우 : iʰ = iʰ· + (iʰ· - iʰ·) × m' / (12×n')

└ 잔여보증기간 1년미만인 경우 : i<sub>h</sub> = i<sub>h</sub>1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 i<sub>M</sub> :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i<sub>M</sub>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n':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m':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 1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펀드의 유형

- (1)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다.
  - ① 밸류혼합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저평가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

- ②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
- ③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 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
- ④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재산의 90%이내,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마켓 및 한국 등 글로벌 주식 [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주식예탁증서 또는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포함] 및 글로벌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 ⑤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 드 재산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이내에서 투자하 며, 상기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
- ⑥ 일반주식형(클래스H, 2011.7.15일 설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국내 투 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40% 이내,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
- ⑦ 단기채권형(클래스H, 2009.12.3일 설정)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

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특히, 채권은 편입일 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국채 2년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2년 이하) 등에 투자

- ⑧ 채권형(2011.6.17일 설정)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 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투자
- ⑨ 인덱스주식형(2011.6.17일 설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 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 200(KOSPI200지수)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 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 ① 삼성그룹주식형(2011.6.17일 설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
- (2) (1)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 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작당 기준가격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총 좌수

-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자산 특별계정 운용보수

## 다.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 자자금의 20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 정의 자산에 따라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 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마.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2) 및 (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사.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 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실적배당형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15.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6. 해지환급금의 지급

- 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7. 급여의 종류 및 지급'의 '나. 급여의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 나.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

관으로 이전한다. 단, 금리연동형Ⅱ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 건별로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이율보 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 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가격조 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리연동형Ⅱ의 중도해지이율 및 이율보증형 시장가격조정 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17. 자산관리협정서 및 청약서 등의 서식

- 가. 자산관리협정서의 서식은 퇴직연금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 나. 청약서의 서식은 퇴직연금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 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퇴직연금 별첨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 18.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 19.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보험의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 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 기타 사항

## 가. 용어의 사용

- (1) 이 보험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 (2) 이 보험에서 가입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한다.

## 나. 계약내용의 변경

이 보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 이내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연금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1)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 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시의 약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및 전환일 현재 '예정기 초율'을 적용한다.
- 라.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협정서

#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협정서

회사(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05-030-31)(이하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기초하여 계약자가 실시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명확히 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운용방법의 종류)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원리금보장형
  - 금리연동형
  - · 금리연동형Ⅱ
  -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 2. 실적배당형
  - · 밸류혼합형(클래스H)
  - ·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 · 일반주식형(클래스H)
  - · 단기채권형(클래스H)
  - 채권형
  - 인덱스주식형
  - · 삼성그룹주식형

## 제3조 (운용방법별 이율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운용방법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의 적용이율로 하며,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금리연동형
  - 가.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여 해당월(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며,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확정 적용한 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나. 회사는 퇴직연금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 중 평균하여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 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적용한다.

- 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라.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 전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o 지표금리(%) = (A1 + A2 + A3) / 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마.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인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율×80%」를 중도해지이율로 적용한다.

#### 2. 금리연동형Ⅱ

- (1) 납입 1차년 적용이율
  - 가.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에 회사가 정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부터 최초 1년 동안 확정 적용한다.
  - 나. 회사는 매월 1일,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 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 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 율을 재산출할 수 있다.
  - 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라.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

- 가.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부담금 납입일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간 확정 적용하며,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확정 적용한 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나. 회사는 퇴직연금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산술 평균하여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 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 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기준이 율의 80%를 최저한도로 적용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

0 기준이율 = (단등자신의 극말 + 자료됩니)

- 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2.0%를 적용한다.
- 라.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담금 납입시점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시점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한다.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2.0%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 적용이율 - 1.5% -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3년미만 : 적용이율 - 1.0%

## 3. 이율보증형

-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하여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며,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확정 적용한 기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나. 회사는 매월 1일,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하고,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다.
- 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라.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1·2·3년형의 경우「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5년형의 경우「국고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 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7 + A2×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6 + A2×0.4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o 지표금리(%) = A1×0.6 + A2×0.4

A1: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4. 실적배당형

적용이율은 해당사항 없음

####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수수료는 운용방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자산관리수수료

가.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 수수료율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적립금 규모별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일 계상하며 년단위로 합산

적립금 규모	단일 수수료율
500억 미만	0.0010958904%(年 0.40%)
500억 이상 ~ 2,000억 미만	0.0009589041%(年 0.35%)
2,000억 이상	0.0008219178%(年 0.30%)

- 납입주체 : 계약자

- 납입방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

(단, 회사와 협의한 경우 수수료 별도납입 가능)

## 나. 실적배당형

- 수수료율 : 매일 적립금의 0.0010958904%(年 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계상하며 년단위로 합산

- 납입주체 : 계약자

- 납입방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

(단, 회사와 협의한 경우 수수료 별도납입 가능)

다. '가'목 내지 '나'목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시행일(2013.2.25)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총 수수료금액의 5%	

2. 약관 제18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다른 취급기관(법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년도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다. 단,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수수료를 별도납입 할 수 있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

가.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없음

#### 나. 실적배당형

(1) 매일 적립금에서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회사는 적립금에 서 매일 차감한다. 다만, 펀드별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수탁보수는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수탁보수	
일 반 주 식 형 ( 클 래 스 H )	0.0015753425% (年 0.575%)	0.0008356164% (年 0.305%)			
인 덱 스 주 식 형	0.0018493151% (年 0.675%)	0.0005068493% (年 0.185%)		0.0000273973% (年 0.010%)	
삼성그룹주식형	0.0013972603% (年 0.510%)	0.0000273973% (年 0.010%)			
글로벌혼합형 (클래스H)	0.0014246575% (年 0.520%)	0.0001671233% (年 0.061%)		0.0000547945% (年 0.020%)	
밸 류 혼 합 형 (클 래 스 H )	0.0014246575% (年 0.520%)	0.0004383562% (年 0.160%)	0.0000273973%		
그로스혼합형 (클래스H)	0.0014246575% (年 0.520%)	0.0004328767% (年 0.158%)	(年 0.010%)		
인 덱 스 혼 합 형 ( 클 래 스 H )	0.0012876712% (年 0.470%)	0.0002630137% (年 0.096%)		0.0000273973%	
자산배분혼합형 (클 래 스 H )	0.0012876712% (年 0.470%)	0.0003917808% (年 0.143%)		(年 0.010%)	
채 권 형	0.0008767123% (年 0.320%)	0.0001643836% (年 0.060%)			
단 기 채 권 형 ( 클 래 스 H )	0.0004383562% (年 0.160%)	0.0000547945% (年 0.020%)			

(2)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 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 자료 등에 기재한다.

##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나 새로이 작성되는 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계 약 자 : 회 사 : (별첨 제2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별첨 제3호)

보 험 증 권(보 험 가 입 증 서)의 서 식